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7
----------	-----

제출년월일 2001. 4.
제출자 제천시장

□ 제안사유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 의결된 조항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시민에 대한 의무부과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보장과 권리신장에 기여코자함

□ 주요골자

가.제20조(가축사육제한)중 제4항 및 제5항의 「가축사육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거 가축사육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 별지 서식의 가축사육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인 법률에서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지적되어 이의 조항을 삭제하고 자함

나.제21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의분뇨발생 및 악취의 발산 등으로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육하여야한다.」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의무라는 용어 사용으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규제 아닌 규제로 지적되어 삭제하고자함

다.제22조(분뇨관련영업자의 의무)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 다음달 5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 삭제하고자 함

관계법령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28조제3항, 제4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의5

입법예고결과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없음(기간: 2001. 2. 16~
2001. 3. 8)

조례안 : 불임참조

신·구 조문 대비표 : 불임참조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지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0조(가축사육제한)① (생략)</u></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제2항의 가축사육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축사육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의한 신청시 시장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 우려가 없을 경우(가축분뇨처리시설을 갖추었을 경우)별지 제2호 서식의 가축사육 신고 필증을 교부하고 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p>	<p><u>제20조(가축사육제한)① (현행과 같음)</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삭 제></p> <p>⑤ <삭 제></p>
<p><u>제21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자(방목장을 포함한다.)는 가축의 분뇨발생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육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u>제22조(분뇨관련영업자의 의무) 분뇨관련영업자는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설적과 수수료의 징수설적을 매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u></p>	<p><삭 제></p>

[별지 제1호서식]

가 축 사 육 신 청 서

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장소			
가축사육수 및축분·뇨 처리방법	가 축 명	사 육 수	축분·뇨처리 방법

첨 부 : 설치장소(안내도) 1 부

상 기와 같이 가축을 사육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성명

제 천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가축사육신고필증

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리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설치장소			
가축사육수	가축명	사육수	축분·뇨처리 방법
및 축분·뇨 처리방법			

제천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신고를 필하였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제 천 시 장

2000. 7. 9.

堤川市文革委員會

第3次 行政規制 審議資料



堤 川 市

조례·규칙등에 근거한 규제사항 심의안건

의안번호	36	관련부서	환경관리과
조례·규칙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20조		
관련법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규제사무	가축의 제한		
규제내용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실과소의견	<p style="margin-left: 20px;">【폐지】</p> <p>동조례 제20조 제4항, 제5항은 동법률 제34조 규정에 없는 규제사항으로 폐지타당</p>		
연구진의견	<p style="margin-left: 20px;">【폐지】</p>		
평택시의견	<p style="margin-left: 20px;">【폐지】</p>		
규제개혁위원회의견	<p style="margin-left: 20px;">【폐지】</p>		
의결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폐지	<input type="checkbox"/> 완화	<input type="checkbox"/> 존치

월간 未來 퇴양관 忠北

제천 시

우(390 - 701) 충북 제천시 천남동 12-2 / 전화 (0443) 640-6032 (행)6032 전송 640-6049
처리부서 : 기획담당관실(본관2층) / 담당관 조동현 / 기획담당 최춘일 / 담당자 김재호

문서번호 기획 01600 - 102
시행일자 1999. 2. 13. (년)
(경유)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취급		시장
보존	년	
부시장		元
담당관	전결	기획담당 <i>기획 담당 조동현</i>
기안	★● <i>기재호</i>	협조

제 목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결과 알림

'99. 2. 12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결과를 불임과 같이 알리오니 관련 행정규제사무에 대하여 조례·규칙 등을 개정(폐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시기 : '99. 3월중 완료 추진(임시회 상정)
- 정비대상 :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규제 전반
- 정비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붙임 :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 및 심의결과 1부.



제천 시장

받는곳 : 건전생활체육과장, 환경관리과장, 교통과장

< 심의내용 >

○ 존치규제중 11항에 대한 완화

- 소득지원 용자금 대부신청(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추천한다

○ 존치규제중 47항에 대한 완화

-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에어 타월기, 100룩스 이상 조도유지 규정)
→ 삭제 완화

□ 기 타

○ 분뇨관련 영업자의 의무(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에 규정)

문서번호	01600 -
보존기간	년
보고일자	'99. 2.

★◎ 담당자	담당	담당관	부시장
김재호	김재호	김재호	김재호

『규제개혁위원회』 회의결과

- 일 시 : '99. 2. 12(금) 11:00
- 장 소 : 2층 상황실
- 참석 : 재적위원 10명 중 8명 참석
- 안건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심의(171건)

□ 주요심의내용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적정성 여부 심의
 - 행정규제사무 : 171건(폐지 42, 완화 32, 존치 97)

□ 심의결과

< 심의내역 >

안건상정	원안가결	수정가결	비고
171건 _____	169건 _____	2건 _____	

< 최종정비계획 >

구분	총규제사무	폐지	완화	존치	비고
당초 수정	171건	42 42	32 34	97 95	

< 심의내용 >

○ 존치규제증 11항에 대한 완화

- 소득지원 용자금 대부신청(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추천한다

○ 존치규제증 47항에 대한 완화

-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증(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에어 타월기, 100룩스 이상 조도유지 규정)
→ 삭제 완화

□ 기 타

○ 분뇨관련 영업자의 의무(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에 규정)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의결서

심의안건	신청자	심의결과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심의 확정	기획담당관	•수정가결 (11. 4 일 개정판)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1999년 2월 12일

심의위원	심의의견		서명	비고
직책	성명	원안가결		
위원장	신봉수		○	hsc
위원	박길용			불참
"	김경일		○	76
"	신태원		○	선태원
"	한우석		○	한우석
"	이종호			불참
"	권기수		○	권기수
"	강태운		○	강태운
"	조동현		○	조동현
"	이종식		○	이종식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록

일 시 : '99. 2. 12
장 소 : 2층 상황실

발언자	내용	비고
기획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금부터 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국민의례”</p>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중 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상정된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은 제천시 자치법규에서 발췌한 규제사무 171건으로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끝나면 안전별로 정비 계획을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소개(8명) 	
기획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먼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이신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부서장 인사”</p>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심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규제정비업무를 총괄하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행정규제 절차 및 위원회의 기능과 현황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규제 절차 및 위원회 기능 설명”</p> <p style="text-align: center;">“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 안건 현황설명”</p>	

발언자	내용	비고
부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현황설명을 들으셨습니다. ○ 저희가 조례·규칙 등에 대한 규제사무를 검토·분석하여 171건을 발췌한 사항을 각 위원여러분께 2월 8일 심의 자료를 나눠드리고 사전 검토하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한 심의를 하여 주십시오. 	
김경일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11번, 소득지원용자금 대부신청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대부신청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닐까요? 	
기획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조항을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읍면동장은 시장에게 추천한다고 개정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일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45번, 분뇨관련 영업자의 의무사항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지요? 	
기획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일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47번,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지요? 	
총무사회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일 변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건 74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경력 및 거주요건증 무사고 운전경력을 공소권이 없는 교통사고의 경우는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인정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토록 하는 것이 어떤지요? 	

발언자	내용	비고
기획담당관	○ 그 사항은 규정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 시 장	○ 다른 의견 있으신분 계십니까?	
신태원 공장장	○ 안건 130번, 학교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폐지되면 보호지역내 위해시설이 난립할 소지가 있는데 행정규제 완화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발생을 예상하고 건축법을 개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건축과장	○ 상위법이 개정되면 시·군조례는 개정할 수 밖에 없으며 사전규제보다는 사후관리규제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부 시 장	○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 원 일 등	○ 없습니다.	
부 시 장	○ 오늘 심의결과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사무 정비계획은 11번, 47번을 개정 완화토록 하여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 그리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규제사무를 재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정비 추진하겠습니다.	
기획 담당	○ 이상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의결서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 잔자 최 춘 

연번	규제사무명 및 규제내용	근거규정	정비계획			사유	비고
			폐지	의회	존치		
40	○분뇨관련 영업허가 • 관련영업자의 정수를 정할 수 있다 • 인력, 장비, 기타설비 등을 추가 확보토록 명할 수 있다	제천시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 제4조1항 " 제4조3항 (환경관리과)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근거규정 없음	
41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제5조 (환경관리과)	○			분뇨관련 영업자 관리를 위하여 존치 필요	
42	○분뇨처리시설 처리비 징수 방법 등 • 분뇨관련 영업자 또는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는 전년도 반입물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예치	" 제13조4항 (환경관리과)	●			이종과세의 성격으로 부당함	
43	○가축사육제한 • 제한지역내에서 가축종별 사육허용기준을 넘어 가축사육 금지	" 제20조2항 (환경관리과)	○			제한지역내 환경관리를 위하여 존치	
44	○가축사용의 의무 • 가축의 분뇨발생 및 악취 발생 등 주위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 설비	" 제18조 (환경관리과)	●			현실적인 규정이 아니므로 폐지	
45	○분뇨관련 영업자의 의무 •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 시설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정수실적 보고	" 제22조 (환경관리과)	●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삭제	

제 329 호

제 천 시 보

2001. 2. 23(금)

입 법 예 고

제천시 공고 제2001-69호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1년 2월 16일

제 천 시 장

제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개정취지

제천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의결된 조항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등 상위법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시민에대한 의무 부과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보장과 권리신장에 기여코자함

주요내용

- 가. 규제개혁위원회 국무 조정실에서 동조례 제20조(가축사육제한)중 제4항 및 제5항의 「가축 사육기준을 초과하여 가축을

제 329 호

제 천 시 보

2001. 2. 23(금)

사육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가축사육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위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 별지서식의 가축사육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대장에 기록비치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인 법률에서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지적되어 이의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나. 동조례 제21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는자는 가축의 분뇨발생 및 악취의 발생등으로 주위환경과 주민생활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사육하여야 한다.」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며 의무라는 용어사용으로 시민으로 시민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줄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규제 아닌 규제로 지적되어 삭제하고자 함
- 다. 동조례 제22조(분뇨관련영업자의 의무) 「분뇨관련 영업자는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시설 청소시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는 상위법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법률에서 자치단체장이 정할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 아닌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어 삭제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가.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1년 3월 8일까지 제천시장(참조:환경관리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번호 : 640-6256)
-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 (찬, 반여부와 그사유)
-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기타참고사항등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46조 (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 >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하는 자
 -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을 하는 자
 -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을 하는 자
 - 5.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자
- ②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등에 출입하여 그 유지·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 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2·8>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축의 사육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사의 이전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부지알선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9·2·8>
- ③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축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사육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99·2·8>